속초시 공고 제2013 - 705호

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13년 11월 19일



- 1. 행정처분일 : 2013. 11. 19.
- 2. 행정처분 대상업체

상 호 법인(주민)등록번호	대표자	소재지	처분업종 (등록번호)	행정처분 내 역	행정처분 사 유	적용법규
(주)정운 (180111-*****)	김덕용	속초시 농공단지길 70(대포동)	상하수도설비공사업 (부산기장2003-13-01)	영업정지 4월 (2013.11.22~ 2014.03.21)	건설업등록기준 미달(자본금)	건설신업기 본법 제83조

- 3. 공고장소 : 속초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http://www.kiscon.net)
- 4. 공고내용
 - 가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(http://www.kiscon.net)에 공고하였으며, 아울러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,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- 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설과(☎033-639-275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